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56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 강민국 · 서일준 · 한무경

유경준・金炳旭・ 김석기

박성민 · 김영식 · 권명호

이주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있음.

이에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진료비용의 고지) 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15조의2에 따라 고시된 진료항목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빈도 진료항목의 종류 및 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신 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
	여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
	코드 및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u>야 한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
	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진료비용의 고지) 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15조의
	2에 따라 고시된 진료항목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빈도 진료
	항목의 종류 및 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